

문서번호 행정 2014-0501

수 신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김은영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세월호 참사 관련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조사 요청

날 짜 2014. 5. 15. (총 6 쪽, 별첨문서의 참고자료 제외)

세월호 참사 관련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조사 요청

.....

1.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충격 속에 시름에 젖어 있으며, 특히 한 달 가까이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이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야 할 경찰이 오히려 피해 가족과 국민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인권침해를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3. 참여연대가 언론보도와 경찰청 보고자료 등을 통해 수집한 대표적인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행위들은 ① 4월 20일 정부의 더딘 구조에 항의하기 위해 진도에서 청와대로 향하던 실종자 가족에 대한 경찰의 통행 제지 및 채증, ② 5월 9일 시위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청와대 인근에서 시민 통행 차단과 불심검문, ③ 피해 가족들에 대한 사복 경찰의 염탐과 사찰, ④ 그 외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행동에 대한 단속 등입니다(별첨 사례 모음참고).
4. 위 사례들을 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고가 일어난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진도 현장에 왜 그토록 많은 인원의 정보담당 사복경찰들이 배치되어야 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별첨 참고자료10). 경찰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복을 입지 않고 신분을 감춘 채 활동한 것을 보면, 경찰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불법 사찰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동향 파악과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무엇이든 돕고자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구조 활동에 대한 비판 활동조차 단속하는 것은 경찰의 본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참여연대



함께 만드는 꿈
1994-2014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110-043)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16(통인동)
T. 02-723-5300 F. 02-6919-2004 www.peoplepower21.org

다시 한 번, 귀 위원회가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책임자를 문책하고 바로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

■ 별첨. 세월호 참사 관련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사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이석태·정현백

[별첨] 세월호 참사 관련 경찰의 직권남용과 인권침해 사례

1. 청와대로 향하는 실종자 가족에 대한 통행 제지 및 채증

○ 4월 20일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의 더딘 구조작업에 항의하며 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가려 했으나 탑승하러 가는 도중 경찰에 의해 가로막힘. 이에 가족들이 걸어서 가기로 결정하고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도보로 이동하던 중 진도대교 부근에서 경찰 저지선에 다시 막힘. 게다가 경찰은 사진과 영상으로 채증함. 행진 전 새벽에 가족들이 논의를 벌이는 과정에서 논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하던 사복경찰이 발각되기도 함.

▶ 경찰이 실종자 가족들을 진도에서부터 가로막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음.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차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2008년 판례가 있음. 더구나 집회나 시위 현장도 아닌데 경찰은 피해 가족들을 향해 불법 채증활동을 벌임. 명백히 직권 남용에 해당함.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9일 경찰의 채증활동 범위 등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 또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던 사안임.

[참고자료1] 한겨레신문 2014. 4. 20.

[참고자료2] 노컷뉴스 2014. 4. 22.

[참고자료3] 대법원 판례 2008.11.13. 선고 2007도9794

[참고자료4]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와 결정문 2014. 4. 9.

[참고자료5] 경찰청 보도자료 2014. 4. 9.

2. 시민의 통행 차단과 불심검문

○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KBS보도국장의 발언에 격분한 유가족 100여명이 5월 9일 오전 3시부터 오후 4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 KBS 사장의 사과와 발언 당사자의 해임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함.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며 모여들자 경찰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유가족들이 있는 주민센터 앞까지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노란 리본을 한 사람들의 통행을 막음. 일부 시민들은 경찰들에게 시위 용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가방에 담긴 소지품 검사까지 당하는 불법 불심검문도 이루어짐.



- ▶ 서울지방경찰청이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동향이 있어 노란 리본을 단 사람 등은 불법시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시위에서) 차단하라는 지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으로 밝혀짐. 시위가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이동을 차단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함.¹⁾

[참고자료6] 경향신문 2014. 5. 13.

3. 피해 가족들에 대한 사복경찰의 염탐과 사찰 의혹

○ 5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 집결지 사복경찰 인력 내역 및 업무분장, 보고자료>에 따르면,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에 1일 평균 22명의 사복경찰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경찰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피해 현장의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연락과 협력 등을 통한 실종자 신속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관을 배치”했다고 하며, 생산된 자료는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에 의해 파기하여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함.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진도 사고현장에 배치된 사복 경찰관 현황>을 보면, 사고 당일인 4월 16일부터 5월 9까지 희생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 등에 배치된 정보 담당 경찰관 수(누적인원)가 경비·교통 담당 경찰관 666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616명이 배치된 것으로 확인됨.

왜 이토록 많은 인원의 사복경찰들이 배치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와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함.

아래는 경찰청과 관련한 사례가 아닌, 해경 소속 정보 담당 경찰들의 예이지만, 미루어 짐작컨대 경찰청의 사복경찰들도 이와 유사하게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에 대해 불법 사찰에 이를 정도의 정보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됨.

[참고자료7] 경향신문 2014. 5. 2.

[참고자료8] 전남지방경찰청 보고자료

[참고자료9] 경향신문 2014. 5. 14.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참고자료10] 경찰청 보고자료

4월 2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희망은 왜 가라앉았나? - 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 편에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제작진이 피해자 가족과 인터뷰 하는 것을 사복 경찰이 몰래 녹취하다 발각됨. 녹취 이유에 대해 "부정 보도가 나올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함. 이후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신분 확인을 의뢰한 결과, 해양경찰 경무계에 근무하는 경정으로 밝혀짐.

[참고자료11] 조선일보 2014. 4. 27.

세월호 침몰 사고 3일째인 4월 18일부터 세월호 희생자들의 빈소가 차려진 안산지역 장례식장에 평택 해양경찰서 소속 정보관 8명이 배치되었으며, 장례식장 10여 곳을 1인당 2~3곳씩 담당함. 평택 해경측은 "장례에 필요한 시신검안서와 검찰 지휘서 등 필요한 서류 준비를 위해 장례식장에 정보관을 배치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육지경찰인 경기경찰청 소속 정보관 20명이 각각 배치돼서 지원을 하고 있었음.

[참고자료12] 뉴시스 2014. 5. 2.

4. 기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행동에 대한 단속

이밖에 경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행동에 대해서도 과도한 대응을 하고 있음.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경찰의 대응은 일반 시민들을 상당히 위축시키는 정도의 동향 파악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부 비판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 4월 19일 중랑구 면목역 광장에서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영면을 기원하는 촛불 번개’를 주최한 마을공동체 ‘달팽이마을’의 사무실로 29일 중랑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이 찾아와 지자체의 지원 여부, 단체 운영 방식 등 캐물음.

[참고자료13] 경향신문 2014. 5. 1.

○ 4월 24일 부산여성회 연제구지부가 연산 8동 공원에서 개최한 추모 촛불집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현수막과 종이에 희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 생환을 바라는 내용의 글을 각자 현수막과 종이에 적고, 집회 후 공원과 붙어 있는 연산8동 치안센터 담벼락과 공원 펜스에 붙임. 경찰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민들이 붙여놓은 추모글들을 철거함. 주민들이 항의하자 정보과

에서 보관하고 있던 추모글을 돌려줬으나, 일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은 돌려주지 않음.

[참고자료14] 오마이뉴스 2014. 4. 25.